

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번호	691
------	-----

2009. 02. 1
재정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8년 11월 5일, 이우진 의원 외 15명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11일

다. 상정일자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5회 정례회】

제3차 재정경제위원회(2008년 12월 1일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
【서울특별시의회 제213회 임시회】

제2차 재정경제위원회(2009년 2월 13일) 의결(수정안 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 : 권영규 경영기획실장)

가. 제안이유

- 조례 개정방법 중 부칙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은 단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,
-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안」의 내용 중 자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장업무로 하는 사항은 사무위임에 관한 중대한 사항이므로,
-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존중하고 입법절차상의 문제를 명확하게 바로잡기 위해 본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자치구청장, 녹지사업소장,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로수 관련 업무를 시장의 고유 업무로 변경하기 위해 별표에서 삭제하고,
-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「도로법」으로 변경함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제23조
- 예산조치 : 관계없음
- 기 타 :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
3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동 조례안의 제안 배경
 -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 위원회에 회부된 「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부칙에서 가로수 관련 위임사항인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려고 하였음.
 - 그러나 부칙에서의 다른 조례개정은 다른 조례의 자구 또는 인용조문을 정리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할 경우에 사용되어야 하나, 단순한 자구 또는 인용조문의 범위를 넘어 실제적인 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개별조례에서 직접 개정하는 것이 원칙임.
 - 따라서, 입법절차상 우리위원회의 심사권을 존중하여 해당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고, 부칙에 포함되었던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 내용을 의원입법(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우진 의원 외 15명)으로 발의하게 된 것임.

-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
 - 자치구청장, 녹지사업소장,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시장의 고유 업무로 변경하려는 것임.
 - 또한,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로법」으로 변경하려는 것임.

나. 검토결과

- “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”를 서울특별시시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거 마련.[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(제5조) 관련 별표]
 -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업무는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에 따라 구청장 등에게 위임되어 관리하고 있었음.
그러나 일부 구청에서 서울특별시와 협의 없이 수십 년 동안 애써 가꾸어온 가로수를 무분별하게 벌채하거나 일부만 이식하는 형태로 가로수 수종을 교체 하고 있음.
 -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위해 서울특별시에서 협의를 요구할 경우 “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”는 「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」 제4조의 규정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 -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가로수 관리에 대한 사무를 시장 고유권한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음.
- ‘녹지대’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근거법령을 「도로법」으로 변경[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(제5조) 관련 별표]
 - 현행 가로수·녹지대의 관리 사무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근거 법령임.
그러나 가로수 사무가 시장의 권한으로 환수될 경우에는 도로상 녹지대의 관리사무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근거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‘녹지대’의 설치 및 관리의 근거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됨.
따라서 도로상 녹지대는 도로의 부속시설로 속하기 때문에 관련 근거법을 「도로법」으로 적용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음.

<별첨> 참고자료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개 정 안			
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				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			
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				별표 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(제5조 관련)			
주관 부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	주관부 서	사 무 명	근거법령	수입기관
조 경 과	1. 가로수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 (단, 세종로·시청앞의 가로수· 녹지대 설치 및 관리, 노폭 20m 이상 도로신설시의 가로수·녹지대 설치는 제외)	○ 「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	구청장	조 경 과	1.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 (단, 세종로·시청앞의 녹지 대 설치 및 관리, 노폭 20m이상 도로신설시의 녹 지대 설치는 제외) 및 특별 시도의 녹지대 관리	○ 「도로법」 제23조	구청장
	3. 세종로, 시청앞의 가로수·녹지 대의 설치·관리	○ 「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	녹 지 사업소장		3. 세종로, 시청앞의 녹지대 의 설치·관리	○ 「도로법」 제23조	녹 지 사업소장
	4. 자동차전용도로의 가로수·녹지 대의 설치·관리	○ 「산림자원 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	도시기반 시설본부장		4. 자동차전용도로의 녹지대 의 설치·관리	○ 「도로법」 제23조	도시기반 시설본부장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서울시가 전적으로 가로수 개종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 가로수의 개종을 할 때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인지? 만약 그렇다면 자치구에서의 예산 부문도 서로 공유하는 것을 전제하에 협의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?
 - 답변 :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공통목적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이에 상응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.
-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보면,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중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, 가로수를 옮겨심기, 가로수의 제거 등의 사항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'가로수'에 대한 사무를 '도로법'으로 적용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데?
 - 답변 : '가로수'라 함은 도로상의 가로수 즉, 도로의 부속물로서 규정을 하게 되면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공작물로서 포괄적으로 규정될 수 있음.
- 「도로법」에는 가로수에 대해 지정된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상

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지 심도 있게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?

- 답변 : 법률적 검토에 동의함.

5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- 사무위임조례(제5조 관련) 별표 푸른도시국 조경과 사무 중 “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” 사무에 대하여 근거법령과 위임사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위하여 개정안의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하려는 것임.

나. 수정안의 주요 내용

- 개정조례안 별표 푸른도시국 조경과 사무명 중 “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”를 “도로구역 내 녹지대의 설치 및 관리”로 하고, 내용 하단의 “및 특별시도의 녹지대 관리”를 삭제함.

6. 심사결과 : 「수정안 가결」

(제적위원 13명, 참석위원 9명 전원찬성)

※ 동 조례안의 경과사항

- 동 조례안은 지난 2008년도 제35회 정례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우진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, 개정 발의된 주요골자는, 당초 ‘가로수·녹지대’의 사무에 있어 근거법령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, 수임기관은 구청장의 사무이던 것을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고,
- 관련 사무에 대한 근거법령은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서 「도로법」 제23조로 개정하려는 것이었으나, 사무위임권한의 위법성 문제와 근거법령의 적용문제가 쟁점이 되어 관련 법률과 위법성 여부 등 보다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음.
- 이에 따라 우리위원회에서는 사무위임권한의 위법성 문제, 근거법령의 적용문제 등 법률검토를 위하여 3명의 서울시 입법·법률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회신을 받은 결과, 각기 다른 의견이 제기 되어 이에 따른 법률적 검토 및 의견수렴이 불가능했음.
- 그러나, 제35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개최시 개별조례에서 심의하여 가로수 사무가 시장권한으로 환수됨에 따라 이번 수정안에서는 ‘가로수 사무’에 대한 적용법률 쟁점사항은 해소되었음.
- 한편, ‘녹지대 사무’에 대한 적용법률 쟁점사항은 ‘녹지대’를 ‘도로구역 내 녹지대’로 수정할 경우, 위임권한의 문제와 근거법령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안을 가결한 것임.

7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.....